

제288회 임시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6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명 주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68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2. 3. 15.
- 회 부 일 : 2022. 3. 16.

2. 제안이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임대차신고제 도입, 통합복지조사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업무 증가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의 총수 : 1,567명 → 1,586명 (+1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537명 → 1,550명 (+1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 36명 (+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567명 → 1,586명 (+19명)
- 일반직 계 : 1,556명 → 1,576명 (+20명)

- 6급 이하 : 1,477명 → 1,497명 (+20명)

○ 별정직 계 : 10명 → 9명 (-1명)

- 6급상당 이하 : 9명 → 8명 (-1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범위 내

다. 입법예고 (2022. 2. 17. ~ 2022. 2. 23.) 결과 : 의견없음

라. 비용추계 :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의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리인력,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2021. 6. 1. ~ 2022. 5. 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본격 시행됨에 따른 인력 증원 및 통합복지조사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하여 제출되었음
- 현재 성북구 공무원 정원을 1,567명에서 1,586명으로 19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 정원관리기관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기관 일반직 6급이하 13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 일반직 6급이하 7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6급이하 1명을 감원하려는 것임.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¹⁾에서는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구의회 권한에 일부 제한이 있음.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집행기관의 증원 사유는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2년 5월 31일로 종료되고 본격 시행에 따른 필요 인력과, 사회적 충원인력, 코로나19 대응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등 13명을 증원하려는 사항이고
- 의회사무기구 증감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²⁾ 및 동법시행령 제36조³⁾에 따른 정책지원관 5명을 증원하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정직 6급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6급이하 2명을 증원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증원하려는 바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다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법정업무의 확대 등으로 실무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타당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2) 지방자치법 제 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등)①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